

E-3 : 유해 · 위험방지 계획서

1. 목적

건설공사 시공중에 나타날 수 있는 추락·낙하·붕괴·감전 등 재해위험에 대하여 공사착공 전에 설계도, 안전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유해·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강구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함

2. 제출대상공사

- ①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

※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높이까지를 말함.

기타 세부사항은 건축법 제73조, 동법 시행령 제119조(제119조 제1항 제5호 중 나목은 제외)에서 규정한 건축물 높이 산정기준에 따름

- ② 최대지간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

- ③ 터널건설 등의 공사

※ 지표면을 개착하지 않고 지표면하에서 위치하여 소정의 형상과 치수를 가진 지하구조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그 내공 단면적이 2m²이상인 되는 것을 말함.

다만, 기존 철도 및 도로 등 하부에 지하차도 등을 건설하는 공사는 제외

- ④ 제방높이 50미터 이상인 댐건설 등의 공사

- ⑤ 굴착깊이 10.5미터 이상인 굴착공사

※ 지표면에서 최종 굴착저면까지의 깊이 중 가장 깊은 깊이로 산정.

다만, 건축공사에서 집수정, 엘리베이터 피트, 정화조 등을 위한 굴착으로 극히 작은 부문이 깊이 10.5미터 이상되는 경우 제외

- 토석채취, 도로공사 등의 절토공사는 제외

3. 작성 및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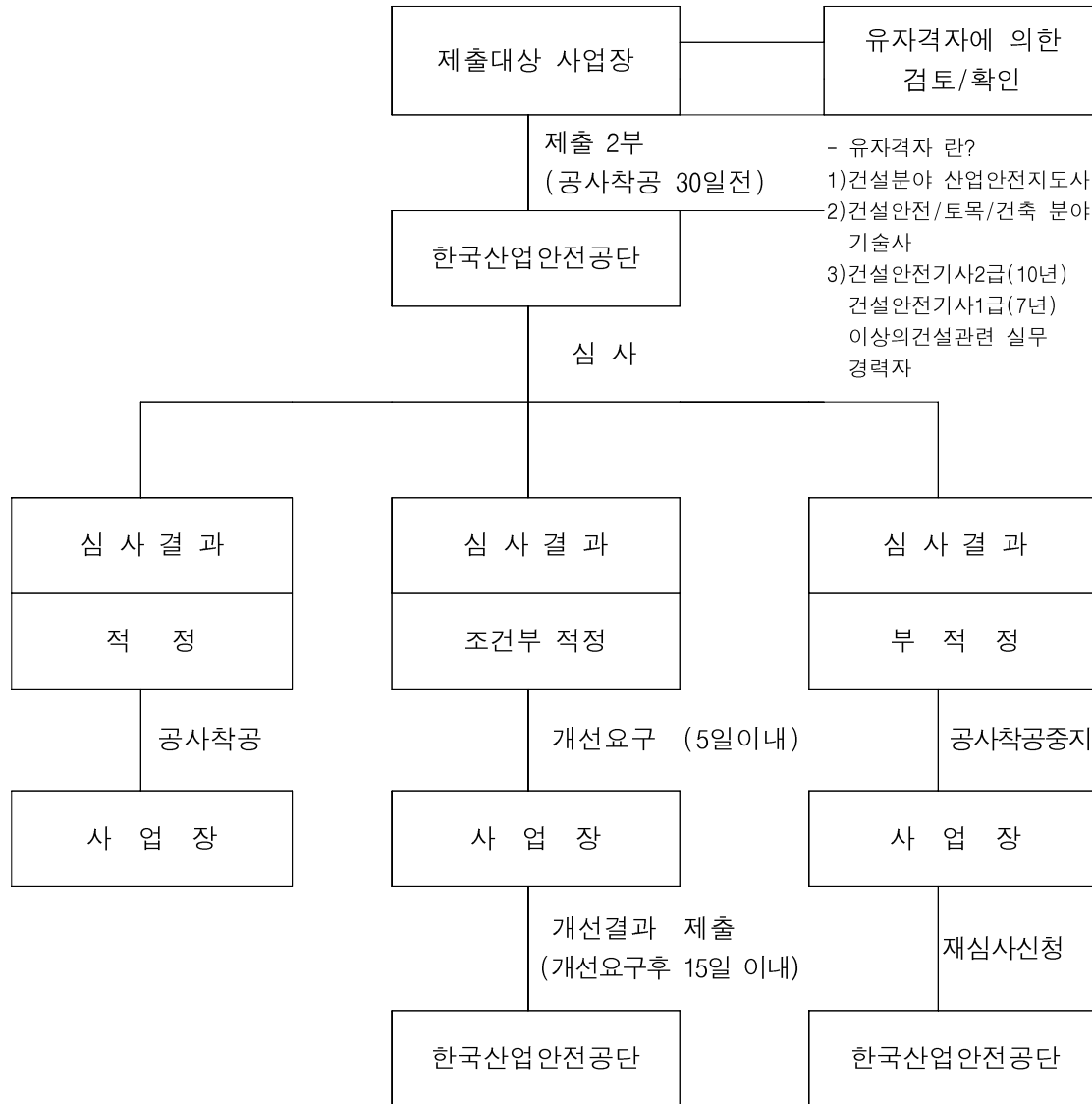
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의견을 들은 후 동계획서는 작성하여, 공사착공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

- 자율안전관리업체는 자체심사를 거쳐 공사착공전일까지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

※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

-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
-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·건축분야 기술사
- 건설안전산업기사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(기사는 5년)이상인 자

유해/위험방지계획서 제출 FLOW



4. 첨부서류

(1) 공사개요

- ① 공사개요서
- ② 공사현장의 주변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
- ③ 건설물 및 공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
- ④ 전체공정표

(2) 안전보건관리 계획

- ①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
- ② 안전관리 조직표
-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
- ④ 개인보호구 지급대장
- ⑤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
- (3) 추락방지계획
 - ① 고소작업장소의 안전방호시설물 설치 계획
 - ② 추락위험장소의 안전방호시설물 설치 계획
- (4) 낙하/비래 예방계획
 - ① 낙하위험장소에 대한 방호시설 설치 계획
 - ② 비래위험장소에 대한 방호시설 설치 계획
- (5) 붕괴방지계획
 - ① 굴착 및 구조물 작업시 붕괴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또는 가시설물 설치 계획 (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등)
- (6) 차량계 건설기계 및 양중기에 관한 안전작업계획
 - ① 양중기 안전작업 및 자체검사 계획
 - ②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작업계획
- (7) 감전재해예방계획
 - ① 고압선에 의한 감전재해예방계획
 - ② 전기 기계·기구에 의한 감전재해예방계획
- (8) 유해·위험 기계·기구 등에 관한 재해예방계획
 - ① 기계·기구 등에 관한 안전사용 및 방호장치계획
- (9) 보건·위생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계획
 - ① 분진 및 소음 발생작업 공중에 대한 방호계획
 - ②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
(식당·화장실·세면장 등)
 - ③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
(터널작업 등 특수작업시에는 특수건강진단 포함)
 - ④ 조명시설물 설치계획

⑤ 질식 및 산소결핍 예방을 위한 환기설비 계획

⑥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비치계획

(10) 화재·폭발에 의한 재해방지 계획

① 위험물질의 종류·사용량과 환기설비 설치계획

② 위험물질의 저장·보관 및 사용시 안전작업계획

③ 발파작업시 안전계획

5. 심사판정

① 적 정

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

② 조건부 적정

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③ 부적정

중대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

6. 확인검사

- 3월에 1회(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회)이상 실시